

#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Professional Opinion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 사회복지 실천가를 대상으로 -

김 용 석

(가톨릭대학교)

하 지 선

(가톨릭대학교)

이 은 영

(가톨릭대학교)

서 정 민

(가톨릭대학교)

김 종 필

(가톨릭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가치 척도인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하여 국내 사회복지 상황에 유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판 POS는 영어판 POS와 마찬가지로 4가지 차원(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며, 옹호척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 지향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천현장의 서비스와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의 관련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제어 : POS, 사회복지 가치 지향, 신뢰도, 타당도

\* 지향이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이라는 뜻으로(표준국어대사전, 1999),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동의 정도를 일컫는 용어로 '지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가치란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브리태니커, 2011)으로 세상은 어떠해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선호하는 삶의 조건 등에 관한 신념을 의미한다(Hepworth, Rooney and Larsen, 1997). 가치는 사회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선호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는 그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사회복지 가치 관련 연구들은(김인숙, 2005; 김기덕, 2008; 이효선, 2008)은 사회복지 실천과 행동의 기준이자 결정요소로써 가치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행위를 모양 짓는 원리로 작용(Skerrett, 2000)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중량을 갖는다.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담론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의 다양성이 더욱 분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주제와 쟁점들이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 흐름을 감지해 보면,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된다. 왜냐하면 가치는 변화에 대해 적절한 원칙을 세우고 접근방향과 대응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치는 교육현장에서도 강조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 같은 실천 관련 교과목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이론이나 실천기술을 다루기에 앞서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는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가 필수 영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교육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는 현황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핵심 가치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도모해왔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4가지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가지는데(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개인의 존엄성, 자신과 관계된 일에 대한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자기결정의 원리, 모든 개인은 신분, 지위, 계층,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회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공동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가치 지향이 실천의 모양새를 만들어왔다는 것에 공통의 견해가 존재해 왔으며,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이 역설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

1)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행위자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보다 ‘사회복지 실천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존 문헌들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실천가’라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지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크게 진전되어 오지 못하였다. 즉,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정도와 영역을 실증적이고 가시적으로 파악하여 실천에 함의를 가져보는 노력은 부족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국외의 경우, 가치와 관련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의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도 함께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Journal of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라는 학술지는 가치와 윤리적 갈등 분석과 해결을 위한 모델 개발, 가치와 윤리가 사회복지실천의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의 기원, 발달, 진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Journal of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2011). 가치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물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관 또는 전문적 가치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Doyle, Miller and Mirza, 2009)가 있으며 가치 및 윤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비교하는 연구들(Itzhaky, Gerber and Dekel, 2004; Danis, Farrar, Grady, Taylor, O'Donnell and Ulrich, 2007)이 있다.

이러한 국내와 국외의 연구경향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 지향을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도구의 존재여부 일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치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가치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가치 척도들의 개발이 꾸준히 진척되어 온 바, Professional Opinion Scale(Abbott, 1988), Social Work Values Inventory(Pike, 1996), Social Work Idealism Scale(Csikai and Rozensky, 1997) 등이 사회복지분야에서 개발되어왔다. 이 중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다(Itzhaky et al., 2004; Danis et al., 2007; Doyle et al., 2009). POS는 다른 사회복지 가치 척도들과는 달리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친 도구이고, 다양한 국적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문화적으로 초월하는 가치척도로 입증된 바 있다(Abbott, 1999).

한편, 현재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전선영(2005)의 연구 외에 전무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사회복지 실천의 옹호태도 형성 및 옹호전략 활용에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함으로써, 사회복지 옹호 실천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사회복지 가치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치 측정을 위한 도구는 Cabtree(2000) 연구에서 사용한 가치 측정 문항을 엄격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번안하여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어판 POS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비록 POS가 우리와는 복지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지만, POS 척도가 내포한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들, 예를 들어 인간의 기본권 존중,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은 여러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가치들이다. 더욱이 POS는 다양한 국적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문화적으로 초월하는 가치척도로 입증된 바 있다(Abbott, 1999). 따라서 국내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외국 검사 도구를 번안하여 검증한 척도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 문화 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며,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기보다 경제적이 수 있다는 점(손원숙, 2003; 채수영·조성재·권혁철·공진용·장문영, 2008) 등은 학술지에 외국 척도를 평가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예: 신선인, 2001; 김용석·이은영·고경은·민은희, 2007; 권자영, 2010)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척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더 나은 실천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며,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국내에서 이는 매우 유용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Abbott(1988)에 의해 개발된 POS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 국내 사회복지 상황에 적합하고 유용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복지 핵심 가치

사회복지 실천은 뚜렷한 가치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으로써, 가치 기반의 전문직이라 여겨져 왔다(김인숙, 2005; 전선영, 2005). Asamoah와 Healy와 Mayadas(1997)는 “사회복지 지식이나 방법론보다 어찌면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역사적으로 지식, 기술,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화해왔지만 가치 그 자체로의 중요성과 필수불가결성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Abbott, 2003; 김인숙, 2005).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한 Schwartz(1992, 1994, Itzhaky et al., 2004: 449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가치는 바람직한 목적 또는 행위들과 관련한 것으로, 특정한 상황들을 초월하고, 행동과 사건들의 평가 또는 선택을 지도하는 개념들 또는 믿음들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윤리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치나 윤리적 원칙을 알릴뿐 아니라 전문적 행위, 태도, 의사결정을 안내하기 때문이다(Greeno, Hughes, Hayward and Parker, 2007).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실천적 가치로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의 유지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Congress and Kim, 2007; 이효선, 2008). 2001년 2월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첫째,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가치는 인간존중과 평등, 서비스 개발과 지원, 사회정의, 옹호 등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의 윤리강령에는 6가지 핵심 전문 가치, 즉 '서비스(Serv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dignity and worth of a person)',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진실성(integrity)', '능력 또는 역량(competence)'을 들고 있다(Greeno et al., 2007). Crabtree(2000)의 연구에 의해 이 6가지 핵심 전문 가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주요 목적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데 있다'는 윤리적 원칙이다. 둘째, 사회정의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 부정의에 도전한다'는 윤리적 원칙이며, 셋째, 인간 존엄성과 가치존중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들이 고유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윤리적 원칙이다.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윤리적 원칙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섯째, 진실성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들이 믿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윤리적 원칙이며, 마지막으로 능력 또는 역량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는 그들 능력 내에서 실천하고 그들 전문적 기술을 증진시키고 발달시킨다'는 윤리적 원칙을 말한다.

국제윤리강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1994, Bisman, 2004: 110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책무는 사회정의의 달성에 있고, 인간의 자기-충족과 복지 그리고 개인, 집단, 국가와 국제적 욕구와 열망에 대한 자원개발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실천적 가치로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의 유지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Congress and Kim, 2007; 이효선, 2008).

이들 사회복지 가치를 논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 가치를 논한 많은 학자들이 논한 바처럼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정의의 지향과 서비스 원조(Frans and Moran, 1993; Itzhaky et al., 2004: 448에서 재인용), 기본권의 존중 및 자기결정권의 지지 그리고 개인자유에 대한 책무(Abbott, 1999), 사회복지사 능력의 정진과 성실성 등을 그 핵심가치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회복지 가치의 역할

최근 소수의 연구들(Bisman, 2004; Itzhaky et al., 2004; 김인숙, 2005; 전선영, 2005; 이효선, 2008; Dolgoff, Loewenberg and Harrington, 2009)에서 그 간 사회복지 실천과 학문에서 가치의 중요성이 당연시 되어 온 만큼 깊은 수준의, 그리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가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의 길잡이로,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수정·변형의 틀로 조망되어, '가치'의 숙고가 사회복지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의 여러 측면에서 일련의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 첫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문제 정의와 접근에 일련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Bisman, 2004). 둘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상 활동에 반영되어 전문직의 실천방향을 제시해준다(Timms, 1983).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환경과 사회구조에 영향 받는 실천영역으로써, 사회복지사는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가치는 서비스 실천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김인숙, 2005; Congress, 2007; Greeno et al., 2007).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주,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질문들, 예컨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안녕상태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는 무엇인가?', '개인의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은 지켜져야만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발생할 때, 행동원리로서 실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Dolgoff et al., 2009). Skerrett(2000)는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실천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패러다임 이동을 창출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말한다. 셋째, 사회복지 가치는 타전문직과 사회복지 전문직을 구별 짓는 기준이 된다. Bisman(2004)은 가치의 고려 없이 지식과 기술의 적용만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으로 타 전문직에서도 지식과 기술 적용은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가치'라는 것이 실천의 토대를 이룸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이 타 전문직과 차이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Greeno 외(2007)와 Dolgoff 외(2000) 또한 Bisman(2004)의 견해와 동일하게 사회복지 가치를 타 전문직과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즉, 타 전문직과 사회복지 실천의 차이는 기술과 지식이 가치를 향해 적용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가치는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요소이자(Osmo and Landau, 2001; Dolgoff et al., 2009), 서비스 실천과 행동의 주요 결정요소이며(Congress, 2007; 이효선, 2008), 방향을 선택하는 핵심기준(Skerret, 2000)이 된다.

## 3) 사회복지 가치의 측정

상기에서 논의된 바처럼 '가치'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 구성요소로 실천과 학문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및 논의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현대에 들어 사회복지사가 더욱 증가적으로 복합적인

이슈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가치와 관련한 연구 및 실천에의 적용은 더욱 중요해진다. 선행연구들(Bisman, 2004; Itzhaky et al., 2004; 김인숙, 2005; 전선영, 2005; 이효선, 2008; Dolgoff et al., 2009)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사회복지 실천전략과 기술 적용 등을 논하기에 앞서 가치에 관한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Abbott(1999, 2003), Crabtree(2000), Greeno 외(2007)와 같은 연구자들은 가치의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가치와 관련한 연구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치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지 않고, 소수의 연구들도 주로 이론적 수준에서 논하고 있으며(김인숙, 2005; 이효선, 2008), 가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최소한의 관심만을 보여 전선영(2005)의 문헌 이외에 사회복지 가치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차원을 연구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 전무한 형편이다.

국외에서도 가치의 실제적인 측정은 어려운 시도로 여겨져 왔다. Abbott(2003)에 의하면 초기 사회복지 실천 연구들은 전문적 가치의 책무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도구에 의존하였고 그 외 뚜렷한 측정방법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대부분의 방법들과 도구들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수단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추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Varley(1963, Abbott, 2003: 643에서 재인용)의 척도는 경험적 근거 없이 연구자의 관념적 인지에 의해 4가지 가치 차원이 정의된 것이다. 그리고 McLeod와 Meyer(1967, Abbott, 2003: 643에서 재인용)는 가치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실천 문헌으로부터 10개 주요 가치 차원들을 발췌하고, 사회사업 실천 교육자들과 사회 연구자들의 패널에 의해 수백개의 진술문으로부터 100문항으로 된 태도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훈련받지 않은 집단, 훈련 중인 집단, 훈련된 집단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으로써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척도는 아니었으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엄격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Howard·Flaitz(1982, Abbott, 2003: 643에서 재인용)에 의해 개발된 Social Humanistic Ideology Scale은 앞의 두 척도에 비해 정교한 척도이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사회적 문제들의 넓은 범위를 반영하여 150개 항목을 선별하였고 6가지의 사회복지 실천 가치 차원(사회적 정의, 사회 행동, 사회적 책임, 인간 본성, 인권, 시민권, 개인의 자율과 자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항목을 확정하는데 있어, 표집규모가 작고 요인분석의 기법이 정교하지 않은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전문적인 사회복지 가치지향을 측정하기 위해 1998년 Abbott가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가지 요인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확인하여 POS의 척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POS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41개 공공사회정책 진술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Greeno et al., 2007). 공공 사회정책 진술문으로부터 문항이 개발된 이유는 이 진술문이 만들어질 때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진술문의 내용에 16,000 사회복지사들의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Abbott, 2003). 초기 200문항에서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검토되어, 121개의 항목이 남았고, 주요성분분석에 의해 결과적으로 4개 요인의 40문항으로 개발되었다.

POS 척도 개발 이후 2개의 추가적인 가치척도가 개발되었다. 하나는 Social Work Values Inventory(Pike, 1994, 1996), 다른 하나는 Social Work Idealism Scale(Csikai and Rozensky, 1997)이다. 그러나 이 두 척도는 모두 편의표본 방법을 사용하였고,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에 한계를 가졌다(Abbott, 2003).

최근 Greeno 외(2007)의 연구에서 POS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POS 척도가 여전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된 POS는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되었다. Abbott(1999)에 의하면, POS 척도는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전문직 예를 들어, 법, 의학, 교육과 기업의 전문직들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제 막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이 졸업생이 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지향의 변화를 알기 위해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초기 전공자와 현장 실천가 간 가치의 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상이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들 간 가치지향을 검증하는데도 사용되었다.

POS 척도에서 4개 요인은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respect for basic rights)',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commitment to individual freedom)',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support of self-determination)'이다. 첫째,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간 권리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개념을 완수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감은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을 향상시키고 진전시키는 프로그램들과 예산지원, 입법을 전개할 책임을 갖는다는 개념과 연결된다. 셋째, 사회정의(또는 개인 자유)는 바라는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단으로써 징계 또는 규율의 사용에 대한 승인(또는 비승인)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자기결정은 삶의 대안들에 관하여 그들 자신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전선영(2005)은 Crabtree(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치 관련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이 가치척도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6가지의 가치로부터 각 가치에 대응되는 1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총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Crabtree(2000)는 이를 다시 사회적 차원의 가치,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다른 문헌들에서 널리 사용된 바가 없으며, 경험적 근거 없이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개발한 한계점을 갖는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지관, 노인복지기관 등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자(표 2참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



집방법을 사용했어야 하나 사회복지기관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도 워낙 많아 표본들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기 위해 소속 기관을 섭외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기관장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연구비용의 문제 등 개인 차원의 연구가 갖는 한계로 인해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중사 분야와 근무 지역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기관, 병원 및 정신보건기관, 아동청소년기관, 지역자활 센터 등). 설문조사를 허락한 기관들에는 연구진이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였고 지방에 소재한 기관들에는 우편으로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5부이며, 이들 중 특별히 불성실한 응답은 발견되지 않아 325부 모두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도구

### (1)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

Abbott(1988)에 의해 개발된 POS는 사회복지 가치 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각각 20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PO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POS 원척도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작성된 척도를 가지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번역과 역번역

우선 POS를 우리말로 번안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는 POS 원본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최대한 손실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한국적 상황과 제도에 어울리는 문항으로 번안하였다. 초기 번역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과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전공자 8인이 참여하였다. 이들 가운데 박사과정의 4인은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3인은 현재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번안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연관된 용어 및 의미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번안 작업은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국어판 POS의 문항별 문장과 용어에 대한 검토와 재검토를 실시하여 예비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비번역본은 POS 원본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영어권에서 생활하는 외부전문가 3인(이중 1인은 사회복지전공 교수이며, 또 다른 1인도 사회복지전공자임)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 과정에서 수정된 문항은, "retirement due to the age limit"의 경우 예비번역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의무 정년제"라고 번역되었으나, 역번역자들의 조언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의무정년 제도"라고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사회복지학 전공교수가 최종 검토하여 사전조사용 설문지로 완성되었

다.

## ②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14인에게 의뢰하여 실시되었고, 이들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4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4인, 그 외 사단법인 소속 사회복지사 4인이며, 이들의 근무 연차는 1~2년차가 5인, 3~5년차가 4인, 6~10년차가 5인이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설문지가 실제 한국 사회복지현장에서 사용됨에 있어 이해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있는지, 그밖에 응답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따라 아래 6개 문항이 수정·보완되었다(표 1).

6개 문항 중 사회문화적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문항은 POS의 문항15, 18, 37의 가족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POS에서 문항15의 경우(표 1참조), “family planning programs”으로, 문항 18과 문항 37은 “family planning”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family planning 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여성과 남성에게 임신 또는 출산의 제한 및 조절 방법, 가족계획서비스<sup>2)</sup>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써 이에 대응되는 국내 용어가 부재하였다. 대신 한국에서 ‘가족계획’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문항 18, 37에서 표기된 “family planning”에 가까웠다. “family plaining”은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계획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일컫는다.<sup>3)</sup> 이에 연구진은 family planning program은 “가족계획 사업”으로, family planning 은 “가족계획 서비스”로 번역 후,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질문지에 삽입하였다.

이외 문항 수정은 다음과 같다. 문항 2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는데, 이 문항의 경우 POS 원본에서도 특정 나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이러한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문장의 구조를 바꾸어 수정·보완하였다. 문항24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신건강서비스”와 같은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에 대한 구체적 부연설명을 추가,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14의 경우, “가족사”라는 표현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문제”로 수정하였다.

〈표 1〉 사전조사에서 수정·보완된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2	기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이들도 종교를 선택할 권리(무교로 남는 것도 포함하여)가 있다.
	수정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종교를 선택할 권리(무교로 남는 것도 포함하여)가 있다.
문항 14	기존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한 유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사로 보아야 한다.

2) 출처: <http://hrsa.dshs.wa.gov/familyplan>

3) 출처: <http://hrsa.dshs.wa.gov/familyplan>

	수정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한 유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문항 15	기존	정부는 가족계획 서비스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수정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가족계획사업 :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여성과 남성에게 제공되는 임신 또는 출산의 제한 및 조절, 자녀출산 계획과 관련한 정책 사업)
문항 18	기존	가족계획서비스는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	'가족계획서비스는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가족계획서비스 :자녀의 임신 및 출산 계획에 관한 지원 서비스)
문항 24	기존	노인은 최소한의 정신건강 서비스만을 필요로 한다.
	수정	노인은 최소한의 정신건강 서비스만을 필요로 한다. (※ 최소한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 중 정신과적 문제 진단 및 치료 연계 서비스를 의미함.)
문항 37	기존	가족계획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	'가족계획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가족계획서비스 :자녀의 임신 및 출산 계획에 관한 지원 서비스)

## (2) 옹호태도 척도

본 연구는 한국어판 PO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엄미선·전동일(2009)이 Paylo(2007)의 옹호특성 척도를 변안하여 타당화한 사회복지 옹호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옹호특성 척도는 '옹호자질', '옹호태도', '옹호행동', '옹호기술', '옹호지식'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하나의 척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각각을 별개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 '옹호태도'는 사회복지사의 옹호상황에 대한 행동이나 반응의 준비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전선영, 2005; 성희자·박재숙, 2009; 엄미선·전동일, 2009). 가치가 태도보다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태도의 바탕이 되는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엄미선·전동일, 2009)을 염두에 둘 때, 다른 하위요인들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옹호태도'를 사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본 연구에서 옹호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90이었다.

## (3)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위, 담당 업무 및 소속기관 유형, 근무처 위치, 가치관련 수퍼비전 경험 여부등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 3) 자료분석방법

###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목적이 POS가 한국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측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척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Abbott에 의해 이미 확인된 요인구조를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POS의 개발자인 Abbott(2003)가 실시했던 확인적 요인분석과 이후 Greeno 외(2007)에 의해 재검증 되었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분석방법을 따랐으며, 가장 최근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던 Greeno 외(2007)와 동일한 통계 소프트웨어(LISREL)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적절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점검하여 POS 문항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와 첨도를 평가하는 기준값은 왜도의 경우 2이하, 첨도의 경우 7이하(Fabrigar, Wegener, MacCallum and Strahan, 1999)가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POS 문항들의 왜도의 범위는 -1.77 ~ 0.94, 첨도의 범위는 -1.21 ~ 4.10으로 나타남으로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델 적합도를 통해 해당 요인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델 적합지수들이 제공되는데,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제시되는 모델 적합지수는  $\chi^2$ ,  $\chi^2/df$ , CFI(Comparative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s),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들이다. 이러한 모델 적합지수는 Abbott(2003)와 Greeno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chi^2$  값은 그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Greeno et al., 2007), 이 값만을 가지고 모델적합도를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chi^2/df$  값의 제시를 통해  $\chi^2$  값의 민감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chi^2/df$  값은 일반적으로 3 이하일 때(Sun, 2005) 모델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CFI와 NN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최악의 모델과 이론적 모델을 비교하는 지수이며 최소한 .90 이상이어야 한다. SRMR의 경우 .08 이하 그리고 RMSEA의 경우 .05~.08 이하일 때 양호한 모델로 해석한다(Sun, 2005).

## (2)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POS의 요인구조를 밝히고 난 후, 이어 POS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하였다. 우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일반적으로 .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1998), 이 기준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POS의 수렴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수렴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두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둘째, 평가 대상인 척도가 측정하는 개념과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국내에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와 이론적

으로 관련 있는 변수로써 사회복지 옹호태도 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선영(2005)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옹호 실천은 사회복지실천가의 가치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가치 지향 수준 분석

본 연구가 한국어판 POS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이지만, 연구진행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 결과물 제시가 가능하므로, 조사대상자의 가치 지향의 정도와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국내에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 지향 측정과 관련된 연구물이 전무한 상태에 일정정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 점수를 제공하고, 아울러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 지향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였고,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T-test, ANOVA,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래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여성 사회복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7%로 남성 사회복지사 28.0%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83.7%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4년제 졸업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 이상의 비율이 36.7%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복지분야 총경력에 있어서는 3년-5년 된 사회복지사가 3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6-9년 된 사회복지사가 27.1%로 나타났다. 현 근무처에서의 근무기간은 3-5년 된 사회복지사 비율(32.3%)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소속 기관 유형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28.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사회복지사도 28.0%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71.4%가 서울과 경기지역(경기 43.7%, 서울 27.7%)의 사회복지사들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위는 팀원 및 일선사회복지사가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관리자는 30.8%를 차지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83.1%로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자의 67.1%가 사회복지 직접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대상자의 71.7%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치관련 교육 이수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2.2%가 학교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가치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조사대상자의 80%가 기관내에서 가치관련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
성별	남	91	28.0	현 근 무 처 위 치	서울	90	27.7
	여	233	71.7		인천	21	6.5
	무응답	1	0.3		광주	16	4.9
	합계	325	100		대전	2	0.6
연령	20대	111	34.2		강원	2	0.6
	30대	161	49.5		경기	142	43.7
	40대	41	12.6		충북	1	0.3
	50대이상	8	2.5		충남	8	2.5
	무응답	4	1.2		전북	32	9.8
	합계	325	100		경북	10	3.1
학력	고졸 이하	1	0.3		무응답	1	0.3
	2년제 대졸	34	10.5		합계	325	100
	4년제 대졸	168	51.7	직위	기관장 및 대표	8	2.5
	석사과정중	76	23.4		중간관리자	100	30.8
	석사 졸업	34	10.5		일선 사회복지사	217	66.8
	박사 과정 중	7	2.2		무응답	0	0
	박사 과정 수료	1	0.3		합계	325	100.0
	박사 졸업	1	0.3	고용 형태	비정규직	53	16.3
무응답	3	0.9	정규직		270	83.1	
합계	325	100	무응답		2	0.6	
사회 복지 분야 총경력	2년이하	65	20.0	합계	325	100	
	3년-5년	104	32.0	담당 업무	사회복지 직접사업	218	67.1
	6년-9년	88	27.1		사회복지 사업지원	78	24.0
	10년이상	62	19.1		기타	17	5.2
	무응답	6	1.8		무응답	12	3.7
	합계	325	100		합계	325	100
현 근무처에 서의 근무 기간	1년이하	75	23.1	자격 사항	사회복지사 1급	233	71.7
	2년이하	54	16.6		사회복지사 2·3 급	77	23.7
	3년-5년	105	32.3		무응답	15	4.6
	6년-9년	57	17.5	합계	325	100	
	10년이상	19	5.8	가치관련 교육이수 여부	학교교육에서 이수	134	41.2
	무응답	15	4.6		보수교육에서 이수	56	17.2
	합계	325	100		학교 및 보수교육에서 이수	111	34.2
기관 유형	종합사회복지관	94	28.9		관련교육 들은 적 없음	14	4.3
	노인복지기관	75	23.1		무응답	10	3.1
	장애인복지기관	91	28.0	합계	325	100	
	아동및청소년기관	10	3.1	기관내 가치 관련 수퍼 비전 여부	정기적 수퍼비전	63	19.4
	병원및정신보건기관	12	3.7		비정기적 수퍼비전	167	51.4
	행정기관	2	0.6		정기 및 비정기적 수퍼비전 받음	30	9.2
	여성관련기관	3	0.9		수퍼비전 없음	55	16.9
	지역자활센터	14	4.3		무응답	10	3.1
	기타	24	7.4		합계	325	100
	무응답	0	0				
합계	325	100					

## 2) POS 기술통계

〈표 3〉은 40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결과이다. POS 척도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3〉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문항은 부정문항(총 20문항)을 표기한 것이다. 이들 40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최소 1.48점, 최고 4.31점으로 나타났다.

긍정문 가운데 높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문항 36(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들이닥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항 2(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문항 6(누구에게나 최저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문항 12(죽음을 앞 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문항5(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이들 문항에 높은 가치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문 가운데 높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문항 25(사회복지사는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관리해야한다), 문항 3(근로자가 실업자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 문항 32(수급자에게 현금보다는 바우처나 현물로 주는 것이 더 낫다), 문항 19(사형제도는 폐지 되서는 안 된다), 문항 22(사형은 범죄행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 내용은 주로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부정문의 경우 역점수로 환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점수를 받은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POS 문항별 기술통계

연	문 항	평균	SD
1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37	1.02
2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종교를 선택할 권리(무교로 남는 것도 포함하여)가 있다.	4.29	0.77
3	근로자가 실업자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	2.98	1.03
4	불임은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중 하나이다.	1.67	0.76
5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4.15	0.68
6	누구에게나 최저 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4.28	0.85
7	커플(Couples)은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3.93	0.80
8	정부는 저소득층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 왔다.	2.19	0.87
9	정부는 부를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	1.74	0.86
10	정년은 60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1	0.93
11	여성은 낙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3.51	0.93
12	죽음을 앞 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4.17	0.67
13	경찰청은 소수정당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한다.	2.45	1.20
14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한 유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2.26	1.04
15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2.19	0.96
16	의무 정년제도는 노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인다.	2.35	0.95

17	수급을 받는 여성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48	0.69
18	가족계획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68	1.00
19	사형제도는 폐지 되서는 안 된다.	2.86	1.34
20	정부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해 포괄적인 보험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4.15	0.60
21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의무 정년제도는 없어야 한다.	3.58	0.92
22	사형은 범죄행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2.86	1.22
23	지방정부는 주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잘 집행하는지 감시되어야 한다.	4.13	0.74
24	노인은 최소한의 정신건강 서비스만을 필요로 한다.	1.87	0.82
25	사회복지사는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3.75	0.93
26	오로지 의료인만이 연명치료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1.90	0.83
27	입신한 청소년은 퇴학시켜야 한다.	1.56	0.75
28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학생들이 항의시위에 참여한다면,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1.57	0.69
29	가정법원에서 청소년에게 변호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61	0.81
30	체벌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26	1.05
31	실업급여는 경제대란과 같은 상황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3.50	1.00
32	수급자에게 현금보다는 바우처나 현물로 주는 것이 더 낫다.	2.90	1.00
33	빈부격차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감소되어야 한다.	3.90	0.91
34	정부는 지역사회가 출소자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3.95	0.70
35	소수자들의 투표행사권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11	0.74
36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들이닥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31	0.78
37	가족계획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10	0.88
38	노인은 가능한 한 평소 지내던 환경에서 부양되어야 한다.	3.66	1.00
39	입양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입양아동이다.	3.92	0.79
40	가족이란 그들 스스로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의무를 갖는 둘 이상의 개인들로 정의될 수 있다.	3.95	0.79

\* 굵은 글씨로 표기된 문항은 부정내용의 문항들임.

###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POS(POS-40)는 Abbott(1988, 2003)에 의해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Abbott가 구성한 4개 요인구조를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POS-40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값은 1640.47(df 734),  $\chi^2$  /df 값은 2.23, NNFI는 .84, CFI는 .85, SRMR은 .077, RMSEA는 .062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chi^2$ /df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3이하)을 충족하였고, SRMR 역시 기준값(0.08이하)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NNFI와 CFI 값의 경우 기준값 .90보다 낮은 값들이 기록되었고, RMSEA도 기준값 .06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각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들의 요인 적재값들은 기준값 .3 이상에 못 미치는 문항들이 총 7개(문항 1, 문항 5, 문항 11, 문항 21, 문항 25, 문항 31, 문항 32)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초기 모델은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상의 .30이하의 요인적재값을 가진 7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Abbott(2003)와 Greeno 외(2007)도 모델적합도 향상을 위해 요인적재값이 낮은(.30 미만) 문항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7개 문항을 제거한 후 33개의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POS-33의  $\chi^2$ 값



은 1080.75(df 489),  $\chi^2/df$  값은 2.21, NNFI는 0.89, CFI는 0.89, SRMR은 0.074, RMSEA는 .063으로 나타났다(표 4). 이는 이전 모델(POS-40)과 비교할 때, 모델적합도 지수 전반에서 개선된 값이다. 하지만 모델적합도 지수들의 개선된 변화에도 불구하고, CFI, NNFI, RMSEA 값은 여전히 일반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문항을 제거한 후에도 10번 문항의 요인적재값은 기준 값(.30)에 미달하였다.

이에 다음으로 요인적재값이 기준에 못 미치는 10번 문항을 추가로 제거한 후 32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모델의  $\chi^2$ 값은 1020.82(df 458),  $\chi^2/df$  값은 2.24, NNFI는 .89, CFI는 .90, SRMR는 .074, RMSEA는 .064로 나타났다(표 4).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들의 요인적재값들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델적합지수 가운데 NNFI와 RMSEA값에서 여전히 기준 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표 4〉 POS-40, POS-33, POS-32의 모델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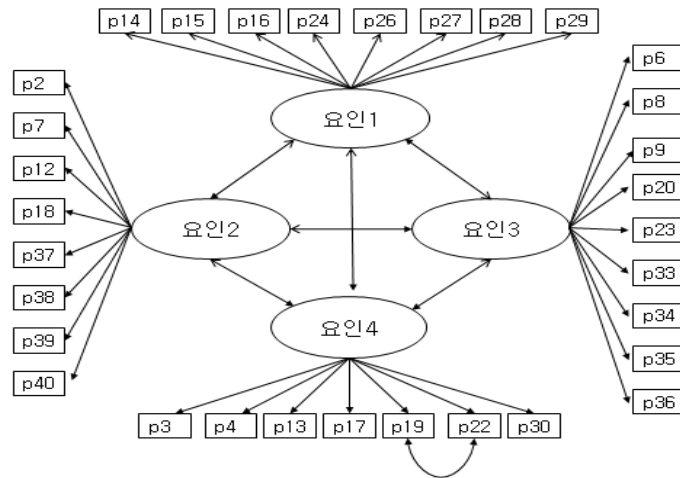
모델	$\chi^2$	df	$\chi^2 / df$	NNFI	CFI	SRMR	RMSEA
POS-40	1640.47	734	2.23	.84	.85	.077	.062 (.058~.066)
POS-33	1080.75	489	2.21	.89	.89	.074	.063 (.058~.068)
POS-32	1028.82	458	2.24	.89	.90	.074	.064 (.059~.069)
POS-32 (오차 상관 추가)	948.91	457	2.08	.90	.91	.070	.059 (.053~.064)

요인적재값이 .30이하인 문항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모델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LISREL은 수정지수를 제공하는데 이 지수를 사용하여 모델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다. 수정지수가 큰 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항 19번(“사형제도는 폐지 돼서는 안 된다.”)과 문항 22번(“사형은 범죄행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의 오차들에 해당하는 수정지수(75.57)가 다른 지수들에 비해 월등히 컸다. 두 문항은 사형제도의 유지를 묻는 문항들로 유사한 내용을 묻고 있다. Abbott(2003)와 Greeno 외(2007)도 동일한 방법(오차 간 상관관계의 추가)을 사용하여 모델을 향상시켰으며 19번과 22번 문항 간의 오차 상관은 Abbott(2003)와 Greeno 외(200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문항 19번과 문항 22번의 오차 간 상관관계를 추가하여 재분석하였다. 〈표 4〉에 제시된바와 같이 모델적합도는  $\chi^2$ 값 948.91(df=457),  $\chi^2/df$ 값 2.08, NNFI .90, CFI .91, SRMR .070, RMSEA .059로 나타났다. 모든 지수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정 전 모델의 지수들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지수들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모델적합도의 향상은  $\chi^2$ 차이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을 통해서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 전 모델과 수정 후 모델 간  $\chi^2$ 값의 차이( $\chi^2_{diff}=1028.82-948.91=79.91$ ,  $df_{diff}=458-457=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수정 후 모델은 수정 전 모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림 1〉은 한국어판 POS-32의 최종 모델이다.

최종 모델에서 모든 요인적재값은 기준 이상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적재값의 범위는 요인 1은 .30~.72, 요인 2는 .33~.53, 요인 3은 .39~.59, 요인 4는 .35~.5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5참조). 요인별 문항수는 1요인 8문항, 2요인 8문항, 3요인 9문항, 4요인 7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최종 문항내용은 부록 참조). 각 요인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인별 명칭은 POS 개발자(Abbott)의 구분에 따라 1요인은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2요인은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로, 3요인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으로, 4요인은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로 명명하였다.

〈표 5〉 최종 모델의 요인적재값

문항번호	요인 1 기본 권리	요인 2 자기결정	요인 3 사회적 책임감	요인 4 개인 자유
2		.33		
3				.35
4				.54
6			.39	
7		.37		
8			.46	
9			.46	
12		.38		
13				.41
14	.37			
15	.31			
16	.38			
17				.57
18		.33		
19				.42
20			.48	
22				.38
23			.49	
24	.48			
26	.61			
27	.66			
28	.72			
29	.48			
30				.56
33			.45	
34			.57	
35			.56	
36			.59	
37		.52		
38		.47		
39		.53		
40		.45		



〈그림 1〉 한국어판 POS-32의 최종 모델

아래 <표 6>은 한국어판 POS-32의 4가지 각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인들은 서로 중간 이하 크기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이러한 요인 간 관계의 크기는 Abbott(2003)와 Greeno 외 (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요인 간 상관계수의 범위(.53~.72와 .52~.83)보다 작았다. 특히 두 연구에서 요인 3과 요인 4의 상관계수가 .72와 .83로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판 POS-32의 요인들은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하면서도 가치의 4가지 하위개념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1	-	-	-
요인 2	.33**	1	-	-
요인 3	.53**	.56**	1	-
요인 4	.54**	.20**	.42**	1

\*\*p < .01

#### 4) 신뢰도 평가

한국어판 POS-32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요인은 .69,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요인은 .63,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요인은 .74, 그리고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요인은 .69로 나타났다.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신뢰계수 값은 앞서 언급했던 일반적 기준(.60)을 충족하는 값이다. 또한 한국어판 POS-32 전체 척도의 신뢰계수 값은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어판 POS-32의 전체 척도 및 각 하위척도들은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7〉 신뢰도 평가 결과

구 분	신뢰 계 수
요인1 :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69
요인2 :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63
요인3 :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74
요인4 :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69
한국어판 POS-32 문항 전체	.85

## 5) 타당도 평가

한국어판 POS-32의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판 POS-32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태도척도의 하위척도인 옹호태도척도와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어판 POS-32의 각 하위척도와 옹호태도 척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가치는 사회복지 옹호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전선영,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한국어판 POS-32의 하위척도 가운데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과 옹호태도척도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을 설명하는 하위척도가 타 하위 척도들 보다는 사회복지 옹호태도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그들의 사회복지 옹호태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한국어판 POS-32와 옹호태도 간의 관계

구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옹호태도척도	.40**	.44**	.52**	.30**

\*\*p < . 01

## 6) 조사대상자의 가치 수준

아래 〈표 9〉는 조사대상자들의 사회복지 가치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각 요인들의 점수(평균± 문항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이 4.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어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영역은 4.09점, 다음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는 4.0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영역이 3.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 하위 영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영역은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한 책임(프로그램과 예산 지원 및 입법 전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은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정부의 역할 혹은 소득수준에 초점을 두는 영역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바라

는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계 또는 규율의 사용에 대한 승인(또는 비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무' 영역에서 조사대상자들은 타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요인별 사회복지 가치 수준

구분	N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문항수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320	8	32.75	3.86	4.09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321	8	31.73	3.55	4.00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321	9	36.87	4.06	4.10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315	7	25.40	4.43	3.6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 사회복지 가치 수준을 살펴보면(표 10), 먼저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 가치 수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국어판 POS-32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는 한국어판 POS-32의 4가지 모든 하위 요인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령별 사회복지 가치 수준에서는, 각 요인들에서 전반적으로 30대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20대는 가장 낮은 평균점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별 평균점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요인과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과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판 POS-32 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성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남	89	33.08	3.35	.89
		여	230	32.69	3.95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남	90	31.92	3.71	.63
		여	230	31.63	3.49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남	90	37.41	4.46	1.37
		여	230	36.68	3.88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남	88	26.07	3.99	1.71	
	여	226	25.18	4.54		
연령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20대	109	32.38	3.45	1.37
		30대	158	33.15	3.97	
		40대이상	49	32.69	3.98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20대	108	31.23	3.25	2.59
		30대	160	32.16	3.39	
		40대이상	49	31.33	4.48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20대	110	35.99	3.86	5.17*
		30대	158	37.58	3.88	
		40대이상	49	36.63	4.73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20대	107	24.12	4.03	9.05*
		30대	156	25.76	4.47	
		40대이상	48	27.10	4.31	
학 력 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4년졸이하	200	31.96	4.00	-5.20*
		대학원재학이상	117	34.09	3.20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4년졸이하	201	31.30	3.48	-2.76*
		대학원재학이상	117	32.43	3.51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4년졸이하	202	36.20	4.15	-3.95*
		대학원재학이상	116	37.96	3.62	
	개인자유에 대한 책무	4년졸이하	196	24.64	4.42	-4.17*
		대학원재학이상	117	26.71	4.14	
직 위 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중간관리자이상	106	33.38	3.61	2.11*
		일반사회복지사	214	32.44	3.95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중간관리자이상	107	31.95	3.97	.76
		일반사회복지사	214	31.61	3.32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중간관리자이상	108	37.76	4.13	2.79*
		일반사회복지사	213	36.42	3.96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중간관리자이상	103	26.08	4.16	1.96
		일반사회복지사	212	25.07	4.52	
사 회 복 지 총 경 력 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2년이하	65	32.12	3.58	2.11
		3년-5년	101	32.79	3.88	
		6년-9년	87	32.53	4.42	
		10년이상	61	33.77	3.05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2년이하	63	31.11	3.92	3.04*
		3년-5년	102	31.30	3.52	
		6년-9년	88	32.31	3.27	
		10년이상	62	32.53	3.26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2년이하	65	36.12	4.01	4.68*
		3년-5년	103	36.37	4.20	
		6년-9년	86	36.95	3.86	
		10년이상	61	38.51	3.91	
	개인자유에 대한 책무	2년이하	62	24.08	3.95	4.37*
		3년-5년	102	25.53	4.38	
		6년-9년	83	25.23	4.85	
		10년이상	62	26.89	4.02	
수 퍼 비 전 유 무 별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유	256	32.82	3.93	.88
		무	54	32.33	3.65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유	257	31.81	3.60	.11
		무	54	31.76	3.28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유	256	37.05	4.11	1.66
		무	55	36.09	3.84	
	개인자유에 대한 책무	유	252	25.35	4.42	-.20
		무	53	25.49	4.44	

\*\*p < .01, \*p < .05

학력에 따른 사회복지 가치 수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부이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들에 비해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들에게서 보다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한국어판 POS-32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 체계 내에서의 교육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사회복지 가치수준이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교육수준과 사회복지 가치수준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직위별 사회복지 가치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영역에서 중간관리자이상자의 평균점수가 일반사회복지사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위에 따른 각 요인영역별 평균점수의 차이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요인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간관리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집단이 팀원 및 일선사회복지사 집단에 비해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점수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점수가 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총경력에 따른 사회복지가치 수준의 경우, 한국어판 POS-32의 4가지 요인영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총경력이 많은 집단일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각 집단별 평균점수의 차이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요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요인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어판 POS-32의 4가지 요인영역 모두에서 사회복지 총경력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곧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총경력이 길수록 각 하위요인별 사회복지가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관 내 가치관련 수퍼비전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복지 가치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기관 내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점수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한국어판 POS-32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 내 가치관련 수퍼비전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 간에 가치 수준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의 측정을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동향과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 현장에서 가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사 가치 지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그 이유에 대해 본 연구는 가치 측정의 도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Abbott가 개발한 POS를 번안,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여 사회복지 실천가 가치 지향의 측정도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어판 POS-32의 개발은 국내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어판 POS-32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2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판 POS-32는 영어판 POS처럼 4개의 요인(기

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으로 구성된 척도로 분석되어 영어판 POS의 4요인 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모든 요인적재값은 .30 이상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복수의 모형적합도 지수들도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만 한국어판 POS-32와 영어판 POS는 요인별 문항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영어판 POS는 요인별로 10개 문항씩으로 모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한국어판 POS-32는 8개 문항이 제거되어 되어 최종적으로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은 8개 문항,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는 8개 문항,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은 9개 문항, 그리고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는 7개 문항이었다. 제거된 문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거된 8개 문항들은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2개 문항, 정년을 내용으로 하는 2개 문항, 공공부조 수급을 내용으로 하는 4개 문항이었다. 제거된 문항들은 유사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묻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와 “수급자에게 현금보다는 바우처나 현물로 주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묻고 있으며 후자는 요인 4(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에 적재된 문항들 중 유일하게 부정적 내용의 문항이어서 다른 문항들과 약한 관계를 보였다.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2개 문항(“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여성은 낙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도 유사한 내용을 묻고 있다. 정년 관련 문항들(“정년은 60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의무 정년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판 POS-32가 사회복지 연구를 위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후속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다수(83.7%)가 20대와 30대 사회복지사들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본 연구에 많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별 가치의 차이에 대한 일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듯이(표 10)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에서 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 발간을 위해 실시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에 6,483명의 사회복지사가 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8.3%였다. 전국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후속연구는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해야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의 결과도 표본의 대표성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POS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조사가 평가한 40문항 POS 이외에 32문항과 28문항 POS가 있다. 3개 유형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40문항 POS에서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요인에 적재되었으나 32문항 POS에서는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요인에 적재되었으며, “체벌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는 40문항 POS에서는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요인에 적재되었으나 32문항 POS에서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요인에 적재되었다(Abbott, 2003). Greeno 외(2007)는 32문항 POS를 확인적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는데 32개 문항 중 요인적재값이 낮은(.30 미만) 4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8개 문항으로 구



성된 POS를 제시하였다. 한국어판 POS도 Abbott의 32문항 POS와 요인구조는 동일하나 요인별 문항들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POS가 표본에 따라 요인에 적재된 문항들과 요인별 문항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POS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 연구는 32문항 POS와 28문항 POS의 한국어판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보다 우수한 한국어판 POS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어판 POS-32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 지향 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척도임은 분명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을 뿐 가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해 왔다. 이에 한국어판 POS-32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가치 수준을 타 전문가 집단과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의료 및 정신보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임상심리사 등은 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와 타 전문가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가치를 다양한 변수들(예: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과 연결하는 연구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가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도구가 개발될 필요성을 부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자영. 2010. “한국어판 치료적 관계척도(STAR-K)의 타당화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81-110.
- 김기덕. 2008. “사회복지사 윤리의식 및 가치 돌아보기 : 사회복지전문직만의 고유 정체성”, 『Social Worker』 77: 34-35.
- 김인숙. 2005.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상황과 복지』 20: 119-152.
- 김용석·김장배·이영숙·이현주. 2010. “한국어판 사회복지실천기술 척도(PSI)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I: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4): 5-32.
- 김용석·이은영·고경은·민은희. 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lient Satisfaction Inventory)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59(4):83-109.
- 브리태니커. 2011.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Retrieved March 30, from [http:// preview.britannica.co.kr](http://preview.britannica.co.kr)
- 성희자·박재숙. 2009.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옹호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9: 53-76.
- 손원숙. 2003. “심리검사 번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2(2): 57-80.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210-235.
-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이해』. 학지사.

- 엄미선·전동일. 2009. "사회복지 옹호특성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191-212.
- 이효선. 2008. "사회복지 기본가치와 보편적 윤리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칸트를 넘어 하버마스까지". 『한국사회복지』 6: 47-61.
- 전선영. 2005.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채수영·조성재·권혁철·공진용·장문영. 2008. "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PIADS)의 국내 적용을 위한 변안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3): 71-85.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한국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 서울: 양서원.
- \_\_\_\_\_. 2011. "윤리강령". <http://www.welfare.net/>
- Abbott, A. A. 1988, *Professional Choices: Values at Work*. Silver Spring, MD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Abbott, A. A. 1999, "Measuring Social Work Values: A Cross-Cultural Challenge for Global Practice". *International Social Work*, 42(4): 455-470.
- Abbott, A. A. 2003.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rofessional Opinion Scale: A Values Assessment Instrument".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3(5): 641-666.
- Asamoah, Y., L. M. Healy and N. Mayadas, 1997. "Ending the International Domestic Dichotomy: New Approaches to a Global Curriculum for the Millenni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3(2): 389-401.
- Bisman. C. 2004. "Social Work Values: The Moral Core of the Profes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 109-123.
- Csikai, E. L., C. Rozensky. 1997. "Social Work Idealism and Students' Perceived Reasons for Entering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3: 529-538.
- Congress, E. and W. Kim, 2007. "A Comparison of Social Work Ethical Cod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Confidentiality, Dual Relationships, Cultural Diversity and Impaired Colleagu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4(2) : 175-192.
- Crabtree, C. R. 2000. "Who We Really A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Attainment and Social Work Value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Danis, M., A. Farrar, C. Grady, C. Taylor, P. O'Donnell, K. Soeken and C. Ulrich. 2007. *Does Fear of Retaliation Deter Requests for Ethics Consultation?*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 Dolgoff, R., F. Loewenberg, and D. Harrington. 2009.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8th)*. Thomson Learning.
- Doyle, O., S. E. Miller, F. Y. Mirza. 2009. "Ethical Decision-Making in Social Work: Explor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Values." *Journal of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6(1) [http://www.socialworker.com/jswve/content /view/113/67](http://www.socialworker.com/jswve/content/view/113/67)
- Fabrigar, L. R., D. T. Wegener, R. C. MacCallum, and E. J. Strahan.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 272-299.
- Greeno, E. J., A. K. Hughes, R. A. Hayword, and K. L. Parker. 2007.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rofessional Opinion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4) : 482-493.

- Hair, J. E.,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Hepworth, D., R. Rooney, and J. Larsen. 1997. *Direct Social Work Practice* (5th ed.). California: Brooks/Cole.
- Itzhaky, H. P. Gerber, and R. Dekel, 2004. "Empowerment, Skills, and Values : A Comparative Study of Nurses and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1: 447 - 455.
- Journal of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2011. "Welcome to the Journal of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Retrieved March 30, from <http://www.socialworker.com/jswve/>
- Osimo, R. and R. Landau. 2001. "The Need for Explicit Argumentation in Ethical Decision-making in Social Work." *Social Work Education* 20(4): 484-492.
- Pike, C. K. 1994. "Development of the Social Work Values Invent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bstracts International, 55(01), 1696A.
- Pike, C. K. 1996.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ocial Work Values Inventor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6: 337-352.
- Skerrett, D. 2000. "Social Work: A Shifting Paradigm".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4(1): 63-73.
- Sun, J. 2005. "Assessing Goodness of 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 240-256.
- Timms, N. 1983. *Social Work Values: An Enqui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Professional Opinion Scale

**Kim, Yong-Se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a, Ji-Seo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ee, Eun-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 Jeong-M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im, Jong-Pil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lthough social work values are stressed among social work educators as well as practitioners, empirical studies on values have been very scar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 The Korean version was validated with a sample of 325 social worker working in various types of social work agencies.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that 8 items be removed, resulting in 32 items with 4 factors. The Korean version has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POS reported by its developer.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 are found to be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social work values. However, validation with more representative samples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

Key word : POS, social work values, reliability, validity

[논문 접수일 : 11. 04. 10, 심사일 : 11. 04. 19, 게재 확정일 : 11. 06. 17]

<부록>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POS-32)

구분	문항	원척도의 문항번호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1.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의한 유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14
	2.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 가족계획사업 : 의도하지 않은 임신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 층 여성과 남성에게 제공되는 임신 또는 출산의 제한 및 조절, 자녀출산 계획과 관련한 정책 사업)	15
	3. 의무 정년제도는 노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인다.	10
	4. 노인은 최소한의 정신건강 서비스만을 필요로 한다. (※ 최소한의 정신건강 서비스 :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 중 정신과적 문제 진단 및 치료 연계 서비스를 의미함)	24
	5. 오로지 의료인만이 연명치료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26
	6. 임신한 청소년은 퇴학시켜야 한다.	27
	7.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학생들이 항의시위에 참여한다면,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28
	8. 가정법원에서 청소년에게 변호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9
자기 결정에 대한 지지	9.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종교를 선택할 권리(무교로 남는 것도 포함하여)가 있다.	2
	10. 커플(Couples)은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7
	11. 죽음을 앞 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12
	12. 가족계획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계획서비스 :자녀의 임신 및 출산 계획에 관한 지원 서비스)	18
	13. 가족계획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계획서비스 :자녀의 임신 및 출산 계획에 관한 지원 서비스)	37
	14. 노인은 가능한 한 평소 지내던 환경에서 부양되어야 한다.	38
	15. 입양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입양아동이다.	39
	16. 가족이란 그들 스스로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의무를 갖는 둘 이상의 개인들로 정의될 수 있다.	40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	17. 누구에게나 최저 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6
	18. 정부는 저소득층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 왔다.	8
	19. 정부는 부를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	9
	20. 정부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해 포괄적인 보험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20
	21. 지방정부는 주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잘 집행하는지 감시되어야 한다.	23
	22. 빈부격차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감소되어야 한다.	33
	23. 정부는 지역사회가 출소자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34
	24. 소수자들의 투표행사권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5
25.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들이닥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6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	26. 근로자가 실업자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	3
	27. 불임은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중 하나이다.	4
	28. 경찰청은 소수정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3
	29. 수급을 받는 여성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7
	30. 사형제도는 폐지되서는 안 된다.	19
	31. 사형은 범죄행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22
32. 체벌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0	

응답범주 :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